

미국판례 2

허위의 잡지기사에 대해 현실적 손해로서 1 달러와 징벌적 손해로서 1 백 60 만 달러를 인정한 사례

Guccione v. Hustler

미연방지방법원 판결(1980.3.19)

사실개요

1983. 11 판의 허슬러잡지는 펜트하우스잡지사의 소유자인 구치오네가 결혼한 소인이 있으면서도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구치오네는 허슬러잡지사 및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심재판 결과 배심원들은 구치오네에게 현실적 손해로서는 1 달러만을 인정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로서 160 만 달러를 인정하였다. 피고들은 그 후 40 만 달러를 공탁하고 나서, 위 판결의 집행정지를 얻어낸 후, 배심원들의 평결에 불구하고 이에 반대되는 판결(judgment not with standing the verdict)을 하여주거나, 새로운 심리를 하여줄 것을 선택적으로 바라는 이 본건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은 심리로 이 신청을 기각하였다.

결정이유의 요지

1. 이혼한 남자인 원고가 「결혼 중이면서도, 동거하는 애인이 있다」고 하는 허위의 잡지기사는, 원고가 간통을 하고, 따라서 기소 가능한 범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당연히 명예훼손(libel per se)이 성립된다.
2. 피고가 위와 같은 기사가 사실이 라고 믿었다고 증언하고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혼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기사에 관한 특정한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전에도 원고에 대하여 적대심이나 악의를 보여 왔다는 증거들이 있다면, 피고에게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은 명예훼손행위를 한 자를 응징하고 동인이나 타인들이 다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실적 손해와 반드시 관련이 있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현실적 손해로서 1 달러만을 인정하면서, 징벌적 손해로서는 피고의 악의성과 재산정도를 감안하여 160 만 달러를 인정하더라도 무방하며, 이것이 수정헌법 제 1 조상의 언론자유를 해치는 것도 아니다.

결정이유

스위트 판사 집필

피고인 허슬러잡지사(이하 허슬러사)와 플린트판매사(이하 플린트사)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50 조 (b)와 제 59 조 (b)에 의거하여 평결에 불구하고 판결을 내려주거나 새로이 심리하여

줄 것을 선택적으로 신청하였다. 펜트하우스잡지사의 발행인인 원고 로버트 구치오네가 제기한 이 소송은 두 차례에 걸친 심리 뒤에 1985. 10. 17 판결선고절차에 들어갔다. 배심원들은 구치오네에게 보상적 손해로서 1 달러, 징벌적 손해로서 허슬러에 대하여는 90 만 달러, 플린트에 대하여는 60 만 달러 등, 도합 160 만 달러의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다음에 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1. 소송의 구조

이 이주민 사이의 소송은, 원래 구치오네와 펜트하우스사가, 전국적으로 열렬한 독자를 가지고 있는 허슬러 잡지의 1983년 11월 판에 실린 사진과 기사에 대하여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및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소상상 피고들은 래리 플린트(이하 플린트), 허슬러사 및 플린트사 등으로 되어 있었다. 이 소송은 허슬러지의 위 기사가 발표된 후 구치오네가 제기한 수개의 소송 중의 하나였는데, 그 중 가장 관계가 있는 사건은 오하이오에서의 명예훼손소송으로서, 동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플린트와 허슬러사에 대하여 4,000 만 달러의 배상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 평결은 플린트와 허슬러사의 책임면에 관하여는 확정되었으나, 그 손해액에 관하여는 파기되었다. 현재의 소송 과정은 이 이전의 1984. 4. 17, 1984 6. 1, 1985 2. 1, 1985. 8. 16, 1985. 9. 17에 이루어진 각 결정들로 진행되어 왔다. 예심절차에서 플린트에 대한 소는 뉴욕에 대인적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사생활 및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도 각하되었다. 피고들은 또한 현실적 악의의 결여와 발표내용의 실질적 진실성을 이유로 명예훼손 청구를 각하해줄 것을 바라는 약식재판의 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 예심절차의 첫 단계와 마지막 단계에 제기된 위 약식재판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심리는 1985년 9월 두 주일에 걸쳐 행해졌는데, 매일마다 새로운 신청이 제출되고 변론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도합 160 만 달러의 배상을 명하였다. 재판이 끝난 후 당사자들은 집행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는데, 피고들이 40 만 달러를 공탁하자, 피고들이 재판후의 절차 및 불복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집행절차가 정지되었다. 피고들에 의하면 더 많은 액의 공탁은 그들의 지속적인 영업능력을 파괴하리라는 것이다. 공탁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조사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들이 1985. 11 25의 두 변론 후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양측의 변호사들은 원한에 찬 이 싸움을 이 법정에까지 가져오느라 상당한 양의 시간과 정력 및 금원을 소비하였다. 그들의 천재성과 기술은 법원으로 하여금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그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끔 하였다. 이 법원에 제기되는 최근의 명예훼손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절실한 공공의 관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것에 관한 것이다.

2. 명예훼손적 서술과 적용될 기준

허슬러 잡지에 실린 위 짧은 기사는 이 명예훼손소송의 근간을 이루는 다음과 같은 허위의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가 결혼하였으면서도 캐시 키튼이라는 동거애인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그(구치오네)가 그 둘 중의 한 사람이라도 다른 남자와 함께

나체로 포즈를 취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궁금해 진다。」 구치오네가 1979년 처로부터 이혼을 얻어 내고 그 이후 재혼한 바 없음은 다툼이 없기 때문에, 위 서술은 1983. 11. 발표 당시 허위였다.

(1) 당연적 명예훼손(libel per se)

심리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동거애인」이라는 말은 혼인 외의 성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위 서술은 구치오네가 간통을 하고 있다는 특정한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로서의 위 서술은 뉴욕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당연적 명예훼손의 범주에 속한다. 당연적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원고로 하여금 공공의 경멸, 조롱, 혐오나 창피를 받게 하거나 정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그에 관한 사악한 의견을 내포하고, 사회에서의 우호적인 관계를 박탈할 수 있는」 서술에 대하여 독특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뉴욕법상 기소 가능한 범죄를 범했다고 하는 언동은 당연적 명예훼손의 한 범주를 이룬다. 뉴욕법에서는 「생존하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맺으면 간통죄를 구성한다.」(뉴욕형법 § 255. 17). 법원이 심리단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치오네에게 「동거애인」이 있다고 하는 서술은 그가 배우자 아닌 타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위 서술은 범죄여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다. 피고들은, 간통이 기소 가능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 범죄는 너무도 일시적이고 소추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법상의 의미에서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뉴욕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판례들이, 간통죄는 너무나 사소하여 그러한 혐의를 씌우는 것이 당연적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나 입법부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법원은 구치오네의 청구원인이 당연적 명예훼손의 원칙상 그 요건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이 사건에는 결정적으로, 구치오네는 이 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 손해액, 즉 그의 명성에 대한 실제의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구치오네로서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인물

1984. 6. 1.자 결정이유에서 실시된 바와 같이 구치오네는 오하이오에서의 소송에서 공공인물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사건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금지된다. 그 역시 자신이 공공인물인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사건에 따라 허위의 서술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징벌적 손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심원들은 현실적 손해로서 최소한인 1 달러만을 인정했지만, 허슬러사와 플린트사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로서 160만 달러의 배상을 명했다. 피고들은 위 90만 달러와 60만 달러의 배상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불법행위 청구에 대하여 징벌적 및 보상적 손해배상의 기준은 각 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연방배심원들의 과도성에 대한 평가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59조에 의한다. 뉴욕법상 징벌적 손해는 원고가 입은 실제의 손해에 비례적으로 연관될 필요는 없다.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고를 응징하고, 재범을 억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인정될 수 있다. 장래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손해배상이 필요한가 하는 점을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적 사정이 참작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 배상은 유발된 손해 및 피고의 악의성과의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이 있게 마련이다. 징벌적 손해를 검토함에 있어 이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결을 유지하고 법원의 양심에 벗어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은 또한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적 효과의 가능성에 비추어, 거액의 징벌평결을 인용함에 주저함을 보여왔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90 만 달러 및 60 만 달러의 판결은, 제출된 증거와 관계된 자유언론의 행사에 비추어, 법원의 양심에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현실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 사이의 불균형에 대하여 집중공격을 하여 왔지만, 그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적절한 지침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 즉 피고의 악의(mala fides) 또는 보통법상의 악의적 의도를 간과하고 있다. 플린트의 구치오네에 대한 경멸적 논평의 대규모적 캠페인과 과거의 무분별한 출판 등에 관한 증거는 배심원들의 실제적인 평결을 지지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진실의 무분별한 무시는 응징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되며, 원고가 입은 실 손해와는 별개인 것이다. 그러한 행위를 이와 같이 독특한 의미에서 처벌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 1 조상의 보호법익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재의 배심평결이 사법심사에서 보통 비판을 당하는 거액의 평결에 비할만한 것은 못 된다.

마지막으로, 위 배심평결은 피고들의 재산정도에 합리적으로 비례하고 있다. 현재의 환급세액은 허슬러사와 플린트사의 순이익이 각각 700 만 달러, 800 만 달러 이상씩이었음을 보여준다. 1983 년 현재의 피고들의 순재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액수가 인위적으로 증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환급액이 배심원들이 결정할 응징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4. 변호사의 편파적 행동

피고들은 그들이 편파적이라고 보는 원고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해 격렬하게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허슬러사와 플린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진술로 인하여 편견이 생겼기 때문에 책임 및 손해액에 관한 배심평결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을 당사자간의 우호성의 결여, 그리고 잦은 소송으로 인하여 더욱 거칠어진 원고 변호사의 강압적이고도 거친 스타일에 의하여 야기되는 곤경에 민감하다. 변호사의 수시적인 지나침을 수정하기 위하여 법원은 부적절한 진술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배심원들에게 증거능력이 없거나 관계없는 증거들을 무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적절한 예절을 갖추기 어려운 것은 물론 차마 발표할 수 없는 사건의 대상물에도 그 원인이 있다. 허슬러사가 발행해온 바 있는 예전의 기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편파적이라는 규탄을 압도하지만, 어쨌든 허슬러사가 호모섹스행위, 성병과 기타의 도화적 성문제에 관한 사진이나 묘사를 게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원고 변호사의 거친 진술의 대부분은 극도로 불결한 사건의 사실상황으로부터 직접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배심원들이 피고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할

명백한 의도로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과 추론들을 너무 지나치게 다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사하게, 피고측 증인의 증언에 대한 구치오네측 변호사의 논평을 그 문맥에서 떼어내 살펴보면 직권 남용인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증인들이 거짓말이라고 한 위 논평은 그러한 논평을 뒷받침하는 상황 증거들을 언급한 후에만 이루어진 것이고, 단순히 편견을 주입하기 위한 기술로 행해진 것은 아니다. 구치오네의 변호사는 선동적인 언동으로 자신의 사건을 강조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도에 달하였던 것은 플린트를 「출판업자 중의 샘(sam)의 자식」, 「출판업자의 콰지모도(Quasimodo)」라고 비유한 말이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극도에 달한 위 당시 배심원들은 과장법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종전의 경쟁자 사이의 적대적인 분위기는 이 재판의 대상인 선동적이고도 사악한 사항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고, 또한 양측에 의하여 유발되었다. 위 강경한 언사는 약간의 증인에 비교하면 무색해진다. 배심원들은 최후변론과 변호사 사이의 대화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공정하고 편견 없이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고 적절하게 지시 받았다. 심리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선동적인 언사가 있었다고 하여 위 판결을 뒤집을 정도는 되지 못한다 새로운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결 론

피고들의 평결에 불구한 판결의 신청이나 선택적인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위와 같이 결정한다.